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제주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2019. 7. 22.

제주도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A, B, C)로 구분하여 적용 시점을 달리하였는데, A와 B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C 부문의 공공건축물은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C 부문 민간 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과 환경관리, 에너지 부문으로 나뉜다. 환경성능 부문은 다시 녹색건축인증·물순환관리·실내환경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치를 요구하는데 먼저 A·B 부문의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 부문의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의 절수형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A 부문 건축물은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이 2급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전 부문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이 3급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환경관리 부문에서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 건축물에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 A 부문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 B 부문은 2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C 부문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 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물 규모 용도별 적용 구분

구분	주거	비주거
A	5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B*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000㎡ 이상~1만㎡ 미만
C	30세대 미만(연면적 합계 500㎡ 이상)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

* 주거용 B등급 이상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및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50세대를 기준으로 적용

*(용도 구분) 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출처: 제주도. (201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7월 22일 보도자료.

*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변기 사용 및 환경표지 인증 소변기 사용 등